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구축·운영 및 인사업무의 재설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운영실태 조사, 민간 및 국제 협력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 1)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제도의 정비 및 인사업무의 재설계, 시스템의 발전·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안 제5조)
  - 2)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 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 1) 인사혁신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안 제7조)

2)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8조)

다. 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안 제9조)

행정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정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데이터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상시 제공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제공받은 인사데이터를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함.

라. 업무의 재설계(안 제11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방법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표준화하고,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음.

마. 민간 및 국제 협력(안 제15조)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환경 분석, 기술의 개발·응용 및 운영 지원,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홍보 및 해외진출 등 민간 및 국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7. 17. ~ 8.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 구축·운영 및 인사업무 재설계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장”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2.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5.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6. “인사데이터”란 인사혁신처 또는 각 행정기관이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

나. 그 밖에 인사관계 법령 등에 따라 생성·취득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

제3조(적용범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하여 다른 인사관계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정비 및 업무의 재설계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6.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 연계 및 협력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실태 조사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5조에 따른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②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행정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및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데이터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위한 인사데이터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1. 신규채용, 승진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3.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인사관리서비스의 제공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사데이터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데이터의 현행화) 행정기관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인사데이터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재설계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또는 방법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거나 표준화하고,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또는 방법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처리 절차 또는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제1항에 따라 재설계하거나 표준화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12조(정보의 보호 등) ①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기관장은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기관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데이터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접근권한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기관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사데이터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변경·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인사데이터의 범위를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 변경,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실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또는 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

스텝,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다른 국가(국제기구를 포함한다)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관련 기술의 개발·응용 및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관련 협력체계 구축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관련 국내외 홍보 및 해외진출

제16조(위임)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로 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b>인사혁신처 정보화담당관</b>	
<b>연 락 처</b>	<b>(044) 201 - 8165</b>